

## 국립중앙의료원 기술직 직원 채용 공고

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9월 6일

국립중앙의료원

### 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| 분야                | 채용 인원 |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안전보건팀<br>(기술직 6급) | 1명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업무</li><li>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업무</li><li>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</li><li>기타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</li></ul>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<p>[필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</li><li>종합병원*또는 일반 기업체**에서 안전관리자로***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</li></ul> <p>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기준<br/>**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 등재된 기업에 한함<br/>*** 경력(재직)증명서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직무(직종)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</p> <p>[우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안전공학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</li><li>건설안전기사, 산업위생기사, 전기기사, 소방설비기사(전기 또는 기계)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</li></ul> |

### 2. 보수 및 근무조건

○ 보수

| 구분     | 월 급여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기술직 6급 | 3,158천원 ~ 4,791천원 | 기타 수당 원내 규정에 따름 |

○ 근무시간: 「국립중앙의료원 복무규정」에 따릅니다.

\* 소속부서 상황 등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

- 계약기간: 일반직(사무행정직, 간호직, 보건의료직, 기술직, 약무직) 최초 임용계약은 1년 이며, 재계약 임용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입니다.

\* 최초 임용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 적용 및 평가 실시

### 3. 접수방법

- 원서 접수 기간: '24. 9. 6.(금) ~ '24. 9. 23.(월) 10:00
- 원서 접수 방법: 온라인 지원 (<https://nmc.recruiter.co.kr>)

### 4. 전형 및 채용일정 안내

- 전형 단계

| 구분    | 1차(서류전형)     | 2차(인성검사)             | 3차(논술고사)               | 4차(1차면접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차(2차면접)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내용    | 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| 온라인 통합역량검사           | 오프라인 논술고사              | 직무수행·직업기초 능력,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(구술 면접) |          |
| 합격 배수 | 10배수         | 당락 미반영 (단, 미응시자는 탈락) |                        | 5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배수      |
| 일정    | ~ 9. 30.(월)  | ~ 10. 4.(금)          | 10. 7.(월) ~ 10. 18.(금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- 1) 상기 일정(안)은 우리 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 일정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.
- 2)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3)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[①취업보호지원대상자→②직전전형 고득점자→③면접전형 항목별 고득점자→④서류전형 항목별 고득점자→⑤내부 면접위원 간 합의] 순으로 합격자 선정
  - \*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시행
- 4) (서류전형-정량): 직무관련 전공 10과목 성적, 영어성적, 자격증 등으로 평가
  - \* 전공과목 10과목 미만 입력 시 해당 배점을 받을 수 없음
  - \*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시행
- 5) 통합역량검사(인성검사) 미응시 또는 기간 내 미완료한 경우 면접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불합격 처리합니다.

## 5. 제출 서류 (면접시 제출함)

- 나열된 순서대로 봉투에 넣고, 겉면에 응시직렬-직급-직종,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하여 면접 시 직접 제출

### <제출 서류>

- ※ 생년월일·주민등록번호 등 나이, 성별을 알 수 있는 항목 **블라인드 처리 요망**(이름, 기관명은 표시되어도 무방함)
- ① (해당자에 한함)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·유족 입증서류
  - 장애인: 동사무소 및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
  - 국가유공자: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제출처를 ‘국립중앙의료원’ 으로 명시)
- ② (해당자에 한함)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
- ③ (필수) 필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  - (자격) 산업안전기사 자격증
  - 경력 확인 서류
    - (1) 경력(재직)증명서(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직무내용 포함)
      -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선임관련 증명자료 추가 제출
    - (2) 4대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중 1종
    - (3) 병원구분 기재 확인서(종합병원 경력자에 한함, ※붙임 3 참고)
  - 모니터 또는 핸드폰 스캔하여 출력한 자료 불인정
- ④ (해당자에 한함) 입사지원서 ‘교육 및 경험’ 분야 작성 시 선정한 직무 관련 전공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(기입한 과목은 형광펜 표기)
  - 직무관련 10개의 전공과목은 채용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(전문)학사 “전공” 교과목 중에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으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정
  - ※ 붙임1(채용 직무설명자료) 참고
  - ※ 필수응시자격에 학력 제한이 없는 경우 전문학사 및 학사 기준, 학력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학위를 기준으로 함. 단, 필수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학위가 중복 해당될 경우, 최종 학위를 기준으로 함
  - ※ 복수(연계)전공의 전공과목은 인정하나 부전공의 전공과목은 불인정
  - ※ 2개 이상의 학위의 전공과목을 혼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불인정
  - ※ F학점, 2학점 미만 교과목, Pass/Fail 또는 직무관련 전공과목 외 일반 교양과목은 불인정
- ⑤ (해당자에 한함) 공인영어시험(TOEIC, New TEPS, TOEFL-iBT) 성적표 원본
  - ※ TOEIC은 국내 시행 시험만 인정
  - ※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만 제출 가능
- ⑥ (해당자에 한함) 분야별 자격증 증빙자료
  - 전문: 변호사, 법무사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CFA(Level3)
  - 컴퓨터 활용: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
  - 경영: 사회조사분석사, 전산세무, 전산회계, CFA(Level2)
  - 언어: KBS한국어능력, 국어능력인증, TOEIC SPEAKING, OPIc
  - 기타: 한국사능력검정

## 6. 응시자 유의사항
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· 출신지역 · 가족관계 · 성별 · 연령 · 결혼여부 · 신앙 · 신체조건 · 사회적신분 등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직무 상세 내용은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**필수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자격사항 또는 경력사항을 입사지원서에 미입력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.**
- **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**
  - 입사지원서에 의미 없는 문구 및 자음 반복 등을 작성하는 경우 불성실 응시자로 간주
  - 외국어시험 등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자격증만 기재
  - 근무, 교육 등 각종 경력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
  -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과 관련한 경력사항, 자격증 소지여부, 어학성적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재직한 사실에 한하여 인정
- **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에 응시하였거나 허위·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며,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**현재 우리원에서 채용전형이 진행 중(공고 ~ 최종합격자 임용)인 모든 채용공고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**
  - 중복지원이 발생할 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또는 상기의 채용공고 게시 순서가 후순위(최신)인 공고 외의 응시사항은 응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 포기한 것으로 간주
- 국가 보훈 대상(각 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 가점), 장애인(각 전형 만점의 5% 가점)은 관계 법령 및 내규에 근거하여 우대하며,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

유리한 한 가지만을 적용합니다.

- 정규직, 무기계약직 등 정년이 정해져 있는 분야의 경우, 공고마감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남자인 경우, 공고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(단,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)
- 논술 및 면접전형에 응시할 경우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)을 소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
  - 상기 종류 외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소지 시 응시 불가
  - 사진으로 촬영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

## 7. 기타 참고사항

-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·위법한 방식으로의 채용 등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합니다. 아울러 채용비리자에게는 사법처리 등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는 합격통보 시 지정된 일자까지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제출을 완료해야하며, 지정받은 임용예정일에 입사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채용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‘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’로 갈음하며,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의료원이 부담합니다.
-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공고는 원내외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채용전형 시행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면접위원이 당해 시험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,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(붙임4 양식).
-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붙임5 양식). 다만,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 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  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(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)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시,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내 발송하여 드립니다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보내시고 인사팀에 확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반환 청구 신청 방법 : 채용사이트 Q&A 또는 우편(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)을 통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양식 첨부) 제출
  - 서류 반환 방법 : 직접 수령 또는 착불 등기우편
-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Q&A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**채용 직무설명자료**

| 채용분야 | 지원분야 |        | 관련부서  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|      | 기술직 6급 | 산업안전기사 |

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<b>직무목적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</li> <li>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</li> </ul>  |
| <b>직무단위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경·에너지·안전 - 산업안전 - 산업안전관리</li> </ul>   |
| <b>주요업무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업무</li> <li>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업무</li> <li>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</li> <li>기타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</li> </ul>  |
| <b>필요지식 및 기술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</li> <li>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 위원회 운영 관리 능력</li> <li>산업재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, 예방 등 관리 능력</li> <li>사업장 내 작업별 안전교육 및 예방적 위험 관리 능력</li> <li>사업장 내 시설물, 공사현장 등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 대응 능력</li> <li>유관기관 주관, 기관 점검 및 평가 준비 및 대응 능력</li> <li>관련 업무 분석·해석, 전달 및 문서 등 행정처리 능력</li> </ul> |
| <b>직무 수행태도</b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</li> <li>다양한 환경에 세밀하고 객관적인 분석력</li> <li>안전준수 의지 및 공정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지</li> <li>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하는 준비성</li> <li>상호 협력과 소통하고자 하는 성실성</li> </ul>   |
| <b>자격사항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필수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</li> <li>종합병원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 등재된 기업에서 안전관리자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(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증명자료)</li> </ul> </li> <li>[우대] 안전공학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및 건설안전기사, 산업위생기사, 전기기사, 소방설비기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</li> </ul>   |
| <b>기초능력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 역할 및 조직의 이해 노력</li> <li>직원 행동강령 준수</li> <li>원활한 의사소통 및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</li> <li>문제해결 및 정보활용 능력</li> </ul>   |

##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(KESS)를 통한 학과(전공) 분류 확인서

### [작성 방법]

1.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(KESS) 홈페이지 PC접속(모바일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므로 PC로 접속하거나,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배너 사용하여 'PC버전'로 접속해야함)
2. 알림·서비스 - 자료실 - 검색어 "2022년 학과(전공) 분류자료집" 첨부파일 참조
  - 홈페이지 주소: <https://kess.kedi.re.kr/post/6773195>
  - 엑셀양식으로 다운받아야 하며, 학위 구분에 따라 시트가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시트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야함
3.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검색된 내용 그대로 작성(내용 변경 금지)

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에 기재된 학과(전공)명 : \_\_\_\_\_

\*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용어 또는 약어를 사용하지 말고 증명서에 기재된 명칭 그대로 작성

대분류(대계열) : \_\_\_\_\_

중분류(중계열) : \_\_\_\_\_

소분류(소계열) : \_\_\_\_\_

**본인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에 기재된 학과(전공)은  
소분류(소계열) 상 관련분야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.**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응시자   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





## 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

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|
| 공고 번호               |  | 지원 분야,<br>응시 번호 |  |
| 성 명                 |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|  |
| 생년월일                |  | 휴대폰 번호          |  |
| 이의 단계               | 서류 전형 [ ], 필기 전형 [ ], 논술 고사 [ ], 면접 전형 [ ]       |                 |  |
| 사실 관계               | 일시, 장소, 대상,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
| 이의 신청 사유            | 이의 신청 사유(이유, 근거)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   |  |
| 관련 근거<br>혹은<br>증빙자료 | (별첨 가능)  |                 |  |

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,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

### 유의 사항

- 채용 전형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내용 작성 시, 육하원칙에 의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회신은 상기에 기재된 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하며,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,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,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되지 않습니다.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|  | 접수일자      |
| 청구인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| 응시분야/수험번호 |
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
| 반환장소<br>(주소와 다른<br>경우 기재) |  |           |
| 반환청구서류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
| 반환 방법                     | 직접 수령 [ <input type="checkbox"/> ], 착불 등기 우편 [ <input type="checkbox"/> ] - O/X 표시 |           |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

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